한화투자증권

2025년 06월 02일
ESG

[ES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②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 상 규제차익 해소

-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보고서**
  - 1회: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 2회: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4년 1월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후 공시 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에 관한 1회 보고서를 기발간하였으며, 금번 2회 보고서는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에 관한 조사·분석을 담았다.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상세한 내용은 p.6 참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본 보고서 발간일 전일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한 KOSPI 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약 71%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또는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의 약 16.5%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 복지', '자금 조달' 등을 처분의 목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 상대방이나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주주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의 약 11.4%로 나타났다.

Comment

(상세한 내용은 p.7 참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취득 후 특정 기한 내 처분을 의무화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에 따라 처분 가능 물량을 제한하는 등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이었다. 이 중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지체없이 주식 실효(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해서 혹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데, 자기주식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 시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시 신주 배정 등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이 금지된다.

2011년 개정 전 상법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취득 후 보유 기간이 특정 기간을 경과하면 자기주식 처분을 의무화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처분 물량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관련 법제도 변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6~7월에 걸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옴	·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또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 자기주식 취득 이후 보유 규모, 처리계획(예: 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함 ·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 상 규제차익 해소	· 그간 자기주식을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또한, 자기주식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루어진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신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기주식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기주식 매입기간 종료 이후 1 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함 ·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앞서 [표1]에 기재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중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 법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공시 실태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앞서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에 관한 1회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금번 보고서는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에 관한 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을 담았다.

[표2]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보고서

회차	주제	설명
1회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 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이에, 2024 년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이 5% 이상인 상장회사 515 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공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함
2회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 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개정 전에도 처분목적, 처분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은 공시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금번 개정에서 추가된 공시항목은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임 · 이에, 법 시행 이후(2024 년 12 월 31 일 이후) 공시된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조사하여 공시 내용의 충실성, 처분 목적의 적정성 등을 살펴봄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근거 법규

종전에도 국내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목적, 처분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을 공시하여야 했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규에 따라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의 공시 항목이 추가되었다.

[표3]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근거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 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 · 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처분의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 상대방
   다. 처분예정금액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 처분방법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 상대방
   다. 처분예정금액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 처분방법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 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칭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근거 법규 개정 전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처분의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예정금액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라.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마. 처분방법 바.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사.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처분의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 상대방 다. 처분예정금액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 처분방법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없음, 신설)	**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 상대방 다. 처분예정금액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 처분방법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 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칭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공시 실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이 시행된 2024년 12월 31일부터 본 보고서 발간일 전일(2025년 6월 1일)까지 약 5개월 간 자기주식을 처분한 KOSPI 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약 71%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또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해당 임직원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의 약 16.5%는 자산운용사 등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를 인수하면서 자기주식을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회사도 있었다.

한편, '자금 조달', '직원 복지' 등을 처분의 목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 상대방이나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주주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의 약 11.4%로 나타났다.

[표5] 개정 법 시행 후 자기주식 처분 사례 처분 목적별 구분[주1]

처분 목적	해당 사례 건수	비중
임직원 보상 또는 직원 복지 목적[주2]	56	70.9%
자금 조달 목적[주3]	13	16.5%
표면적으로는 자금 조달 또는 직원 복지 목적이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등 이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4]	9	11.4%
알 수 없음	1	1.3%
합계	79	100%

주1: KOSPI 기업이 2024.12.31~2025.06.01에 제출한 보고서 기준
주2: 성과급 지급, 우리사주조합 또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교부 등
주3: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 등
주4: 처분 상대방이 계열회사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경영권 분쟁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등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개정 법 시행 후 자기주식 처분 사례 처분 목적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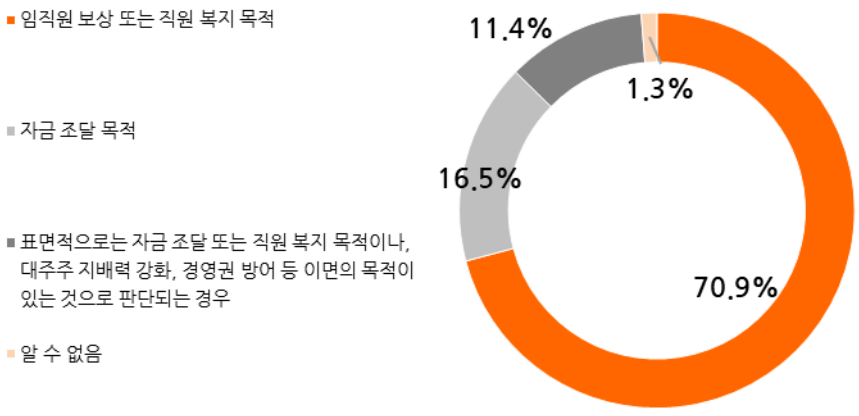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ment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상대방과 그 상대방을 선정한 사유, 가격 산정근거,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전체가 아닌 특정 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다소간(多少間) 억제하는 것이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효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예컨대, 처분상대방을 선정한 사유로 *'투자자의 투자 의향을 고려했다', '처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필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 등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에 대해서는 *'처분되는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작아 희석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조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취득 후 특정 기한 내 처분을 의무화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에 따라 처분 가능 물량을 제한하는 등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이었다. 이 중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지체없이 주식 실효(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해서, 혹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4월 개정을 통해 상법도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제341조),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42조).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기주식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 시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시 신주 배정 등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이 금지된다. **영국**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하되,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적용(처분 시 기존 주주의 우선적인 신주인수권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주주권이 금지된다. 다만 특정 기한 내 소각 또는 매각 의무는 없다.

(자료: 금융위원회)

2011년 개정 전 상법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취득 후 보유 기간이 특정 기간(예: 5년)을 경과하면 자기주식 처분을 의무화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처분 물량에 상한(예: 발행주식총수의 0.5%)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표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항 개정 전후

상법	
2011.04.14 개정 전	**2011.04.14 개정 후**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